

瑞山市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2001. 2. 14
산업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7
- 라. 上程日字 : 2001. 2. 14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都市課長 李仁秀)

가. 提案理由

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이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·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지난 '97년 9월 11일 본 조항이 상기에 명시한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이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다만,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서 규정된 단서 수질 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함)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, 본 규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폐지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1997. 9. 11일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할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「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」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